

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

(판매기업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20 년 월 일

본 인 _____ (인)

주 소 _____

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정서를 함에 있어서 전자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합니다)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.

제 1 조 (전자채권의 보관 등)

은행은 전자채권 발행대행은행(이하 "발행은행"이라 합니다)의 발행등록 의뢰에 의하여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받아 본인에게 전자적으로 전자채권의 보관, 결제대금 수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
제 2 조 (전자채권의 보관통지)

은행은 보관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본인에게 별도로 보관통지 하지 않으며,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합니다.

제 3 조 (이용시간)

- ①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보수,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4 조 (입금계좌 지정)

- ① 본인은 전자채권의 보관 및 결제대금의 수령과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, 전자채권 결제대금수령 및 수수료 결제 통장으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.

계좌번호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

- ② 전항의 입금계좌는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에 한하여 지정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수수료 등)

- ①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수수료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예금청구서 등을 받음이 없이 제 4 조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..
- ② 은행은 수수료 징구방법 및 대상, 시기,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,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개월전 은행 본점 및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.

제 6 조 (전자채권의 발행취소 및 변경)

- ① 전자채권의 발행취소는 원칙적으로 구매기업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있어야 하나, 발행은행의 시스템장애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발행은행의 취소요청만으로 취소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- ② 발행된 전자채권은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없으며, 변경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과 협의하여 발행된 전자채권을 취소한 이후에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.

제 7 조 (전자채권의 만기결제)

보관중인 전자채권의 만기도래시 만기일 전영업일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며, 만기일에 발행은행으로부터 입금내역이 통보되는 경우에 제 4 조에서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
제 8 조 (전자채권의 미결제)

발행은행으로부터 미결제내역이 통보되거나 입금내역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전자채권은 미결제처리됩니다.

제 9 조 (약정의 해지 등)

본 약정은 은행 또는 본인이 해지통보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최근 1 년이상 전자채권 보관 등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 10 조 (정보제공 동의)

전자채권 결제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본인의 개인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를 금융결제원, 발행은행 및 전자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참가은행, 구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 11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-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
 1. 제 8 조에 의해 미결제내역을 통지하였으나 본인의 확인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
 2. 제 4 조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의 거래정지,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입금불능이나 입금지연됨 으로서 발생하는 손해
 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-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2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본 약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약관 및 약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3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본인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4 조 (기타 특약사항)

	본인	(인)
--	----	-----

본인은 「전자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」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본 약정을 체결함.	본인	(인)
--	----	-----

전자채권 결제제도 판매기업 이용 신청서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 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1. 판매기업 정보

법인명 (또는 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이사 (또는 대표자명)		법인등록번호	
업 태		대표이사(대표자) 생년월일	
주요취급품목			
사업장 주소	(우편번호:)		
전화번호		팩스번호	
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 및 기타		

※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“□”에 “✓” 표시 합니다.

2. 담당자 정보

담당부서		담당자명	
담당자전화번호		담당자휴대전화번호	
담당자팩스번호		담당자이메일	
SMS 수신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절	이메일 수신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절

3. 첨부서류

- (1)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- (2)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(본인 자서 날인시 생략가능)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- (3)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
 - ① 법인사업자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 - ② 개인사업자 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- (4) 공동대표인 경우
 - ① 법인사업자 :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.
 - ②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 인과 약정 체결합니다.
- (5)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관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전자채권 결제제도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판매기업) : _____(인)